

# 2021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



강서뇌성마비복지관

[www.grccp.or.kr](http://www.grccp.or.kr)



# 2021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



강서뇌성마비복지관

[www.grccp.or.kr](http://www.grccp.or.kr)

이 책은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복지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 책자는 **강서뇌성마비복지관 홈페이지** ([www.grccp.or.kr](http://www.grccp.or.kr)) 내 알림마당-복지관 간행물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내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뇌성마비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이용편의를 위해 가이드북이 전자책(e-book)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 발간사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뇌성마비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기발견과 진단, 평가를 통해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종합적이며 전인적인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대부분 임신기간 동안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신생아 시기에 뇌손상이 발생하며 나타나는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많은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언어, 시각, 청각, 인지 등 중복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삶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들이 장애로 인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뇌성마비장애인만을 위한 영역별, 생애주기별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 년 복지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을 통해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정당한 시민으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통중심, 변화중심으로 성장하는 복지관’이라는 미션 아래 더욱 발전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전문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뇌성마비복지관장

박세영

# Contents

2021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

---

**알려드립니다!** 10

---

PART 1

## 뇌성마비장애란



뇌성마비의 정의	14
뇌성마비의 원인	15
뇌성마비의 증상	17
뇌성마비의 분류	17
뇌성마비의 치료	20
뇌성마비장애인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 :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23
뇌성마비장애인과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37

---

PART 2

##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b>01. 경제적 지원</b>	<b>42</b>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2
긴급복지 지원제도	44
장애아동수당	46
장애인연금	47
장애수당	4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50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서울시)	50
청년희망키움통장	51
희망키움통장(Ⅰ, Ⅱ)	52
내일키움통장	53
자녀장려금	53
근로장려금	54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55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57
<b>02. 의료·재활·건강 지원</b>	<b>59</b>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59

PART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59
장애인 의료비 지원	60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61
건강보험제도	62
의료급여제도	63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64
재난적의료비 지원	65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65
국가건강검진제도	66
장애친화 건강검진	68
건강보험 산정특례	69
건강보험 차상위	70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71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71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7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7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73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74
<b>03. 임신·양육·교육 지원</b>	<b>75</b>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75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75
영양플러스	76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7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78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7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81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8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2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83

PART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장애아동 양육수당	84
가정양육수당 지원	85
장애아 보육료 지원	86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86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87
영유아 건강검진	88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8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90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90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91
아이돌봄서비스	91
육아종합지원센터	94
다함께 돌봄 사업	95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96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96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97
발달재활 서비스	98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99
급식비 지원	100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00
언어발달 지원	10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01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0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02
고교학비 지원	10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03
장애인 정보화교육	104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04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05
평생교육바우처	105
<b>04. 일상생활 지원</b>	<b>107</b>
장애인 등록신청	10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08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108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10
장애인 활동지원	110



PART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11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112
장애인콜택시	11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1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14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15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17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17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118
서울시 최종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119

**05. 주거 지원 120**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20
에너지바우처	121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2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24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	125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2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26
영구임대주택 공급	126
국민임대주택 공급	127
행복주택 공급	12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31
긴급 주거지원	132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32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35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13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137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38

**06. 취업 지원 139**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4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40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42
자활근로	142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43

PART 2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근로 지원인 지원	14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4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4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46

**07. 보조기기 지원 147**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47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48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49
보조기기 관련 공적 자원 및 문의처	150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151

**08. 법률 지원 153**

무료 법률구조 제도	153
무료 법률상담	153
법률홍닥터	154
마을변호사	154
마을세무사	155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55

**09. 문화여가 지원 156**

통합문화이용권	156
스포츠강좌이용권	15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61
관광정보 안내	162
스포츠활동	164

PART 3

**시설안내**



**0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68**

장애인복지관	16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70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71
보조기기센터	174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17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75
장애인체육시설	177
주거복지센터	17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80

PART 3

## 시설안내



<b>02. 장애인 거주시설</b>	<b>182</b>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82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18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85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86
<b>0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b>	<b>188</b>
근로사업장	188
보호작업장	189
<b>0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b>	<b>190</b>
재활병원	190
장애인치과	193
<b>05. 장애인 교육기관</b>	<b>194</b>
특수교육지원센터	194
장애전담어린이집	195
특수학교	196

#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575만 7,373	662만 8,603	749만 7,198	836만 5,793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224만 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299만 8,879
주거급여 (중위소득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818	298만 2,871	337만 3,739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31만 4,302	374만 8,599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43만 8,145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60만 5,801원, 4인 기준 253만 5,671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1

## 뇌성마비 장애란?

뇌성마비의 정의

14

뇌성마비의 원인

15

뇌성마비의 증상

17

뇌성마비의 분류

17

뇌성마비의 치료

20

뇌성마비장애인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 :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23

뇌성마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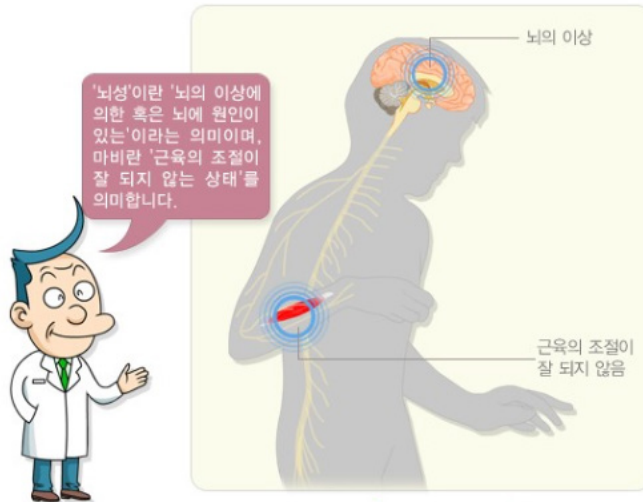
37

# 뇌성마비장애란?

## 뇌성마비의 정의<sup>1)</sup>

-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남기는 비진행성 질환을 뜻하며, 미성숙한 뇌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때 운동장애는 간질 발작과 이차적인 근골격계 문제로 종종 감각, 지각, 인지능력, 의사소통과 행동의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 뇌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나 경련, 언어장애, 학습장애, 시력 및 청력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뇌의 병변, 혹은 손상은 진행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운동과 자세의 이상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뇌성마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뇌성마비아동의 반 이상은 원인을 잘 모르며, 일시적인 운동장애, 진행되는 뇌병변, 지능장애, 척수 이상에 의한 장애는 뇌성마비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림. 뇌성마비의 개념〉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뇌성마비=뇌병변장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성마비 또한 뇌병변장애에 포함되는 하나의 장애유형입니다. 이에 성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운동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뇌성마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 뇌성마비를 소아마비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소아마비는 발병 원인에서부터 뇌성마비와 큰 차이가 있는 질환입니다.

1) 정진업 외4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7 / 정진업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4 / 일레인 게라리스 외13명, 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P2



## 뇌성마비의 원인<sup>2)</sup>

뇌성마비의 75~80%는 임신 기간(출산 전, 분만 전후, 출산 후 등)동안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신생아의 뇌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출생 전에 이미 많은 뇌손상을 입어 생기는 것이며, 출산 후 머리나 목 부위의 손상,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조산아에서의 뇌성마비의 원인

조산 및 저체중은 뇌성마비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한 신생아를 조산아라고 하며, 뇌성마비의 약 50%가 조산아에서 발생합니다.

조산아의 뇌는 허혈성 및 출혈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실내출혈과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이 쉽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위험인자에 노출되더라도 뇌성마비가 더 쉽게 발생하게 된다.

조산아에서 뇌성마비는 뇌조직의 미성숙과 자궁내 감염 및 염증반응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에 의하며, 이러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조산아에서 출생 전후 폐 미성숙에 의한 저산소성 환경, 고동도 산소치료, 기계보조환기에 따른 2차 손상이 보다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 ● 만삭 출산아 뇌성마비의 원인

만삭 출산아는 미숙아에 비해 뇌성마비의 상대적 빈도는 매우 낮지만 대부분의 신생아는 만삭에 태어나기 때문에 50~60%의 뇌성마비 아동은 만삭 출산아이다. 만삭 출산아의 뇌성마비 원인을 임신 시기에 따라 출산 전, 주산기, 출산 후 원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산 전 원인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유전적 이상, 선천성 감염, 선천성 뇌병변



#### 주산기 원인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 출산 후 원인

분만 후 신생아시기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핵황달

### ● 쌍둥이 임신(다태 임신)의 뇌성마비의 원인

다태 임신 자체가 뇌성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단태아보다 쌍태아는 5배, 삼태아는 13배 정도 뇌성마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단태아보다 다태아에서 저체중, 조산의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태임신에서 한 쪽 태아가 사망하거나 출산 후 한쪽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아의 뇌성마비 빈도가 현저히 올라갑니다.

### ●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을 ‘분만가사’, 또는 ‘주산기 가사’라고 하는데, 이는 분만 진통 중 태아에 적절한 혈액이나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산기 가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산과적 상황으로는 태반 조기박리(태반이 임신20주 이후 태아분만 전에 일부분 또는 전체가 자궁에서 떨어지는 상태), 전치 태반(태반이 분만 시에 태아가 나오는 길목인 자궁 문을 가리고 있거나 자궁 문에 걸쳐 있는 상태)에 동반된 출혈, 분만 진통 중에 지속되는 태반의 기능 부전 등이 있습니다.

### ● 신생아 뇌졸중 혹은 주산기 허혈성 뇌졸중

뇌의 어느 한 부분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 조직에 산소 등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용어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며, 만삭분만 2,300~4,000차례 중 1차례 정도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 ● 핵황달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해 적혈구가 파괴되어 그 안에 있던 비결합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중에 늘어나게 되면서 뇌손상까지 일으키고 이로 인해 특징적인 뇌성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혈액형 부적합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핵황달로 인한 뇌손상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 뇌성마비의 증상<sup>3)</sup>

뇌의 운동 신경 부분이 손상되면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뇌성마비가 침범한 부위 및 양상,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운동장애를 동반하는데 대표적으로 성장 발육 지연과 보행 및 운동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화로운 신체운동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 이외에도 감각·인지·의사소통·행동 장애 및 경련성 질환·사시와 같은 안구운동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강의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음식의 섭취가 곤란하고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 호흡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가 심하거나 지적장애가 심한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뇌손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흔히 간질과 같은 경련성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뇌성마비의 분류<sup>4)</sup>

뇌성마비라는 질병을 분류하는 이유는 치료하는 의료진들 간의 정보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예후에 관한 상담·치료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분류를 통해 뇌성마비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뇌성마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뇌성마비는 분류에 따라 다양한 경중도(심한정도)와 예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치료방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분류법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7-25

4)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6-31

## [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

### ● 경직형(Spastic type)

경직성(spasticity)이란 관절을 빠른 속도로 구부리거나 펴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일 때,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잘 늘어나다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지면서 잘 늘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근육의 긴장성이 증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2/3가 경직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직성 및 변형에 대해 물리치료, 석고고정, 바클로펜(baclofen), 보툴리눔독소 주사(botulinum toxin-type A), 선택적 척수 후근 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 SDR), 정형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 근긴장이상형(Dystonic type)

대뇌기저핵(basal ganglia)의 이상이 주된 병변으로 수의운동(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자세 유지 시 사지, 목, 안면 등을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뒤틀거나 꿈틀거리는 불수의운동(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상운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1/4에 해당하며, 수의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긴장하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고 수면 시에는 소실됩니다. 근긴장이상형은 경직형에 비해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 운동실조형(Ataxic type)

평형감각장애와 협동운동장애 등 소뇌의 기능장애로 오는 증상으로 뇌성마비인의 1% 미만이며, 근긴장이상형에서 나타나는 불수의운동은 없고, 보행 시 잘 나타납니다. 운동실조형은 경직형 사지마비와 구별해야 하는데, 운동실조형은 성장함에 따라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 ● 혼합형(Mixed type)

상기 2종류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혼합형이 10% 정도 있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10%정도가 혼합형으로 대부분 경직형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합니다.

## [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

### ● 편마비(Hemiplegia)

편마비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약 30%를 차지하며, 같은 쪽의 상지와 하지가 이환되는 형태입니다.

마비 증상은 몸통 근처 부위보다는 몸통과 먼 쪽 부위에서 더 심한 양상을 보이며, 상지에서는 50~60%의 감각 결손이 있고 주로 고유감각(위치감각, 압박감각, 운동감각, 진동감각 및 심부지각의 총칭)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력 결여의 빈도가 높고, 사시나 반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뇌성마비아동이 보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일반 지능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양측마비(Diplegia)

양측마비는 주로 하지를 침범하며, 양측이 대칭적입니다. 상지의 이환도 있으나 하지에 비해서 증상이 경한 양상을 보이며, 아무리 경한 증상이라도 상지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양측마비는 백질연화증(미숙아의 뇌실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소견으로, 산소 결핍으로 뇌실 주변의 백질 부위가 괴사된 것)의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 ● 사지마비(Quadriplegia)

양측 상지와 하지 모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중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저산소, 혹은 무산소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경련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 75%의 뇌성마비아동에게서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침흘림, 연하·발음장애 등이 동반되며, 2차적으로 영양결핍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은 힘들며, 성장기간 중 척추 측만증 및 고관절 탈구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시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 뇌성마비의 치료<sup>5)</sup>

### ●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물리치료란, 운동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에게 물리치료는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보이는 근 긴장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반사작용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자세반응을 경험하게 하여 머리와 몸통의 정상적인 발달순서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직형 아동은 관절가동범위를 확대하여 구축의 위험성을 줄이고, 무정위형 아동은 근위부를 안정시켜 정중선 유지 및 대칭성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과 수의적인 움직임을 증진시켜 아동이 스스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 ●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는 주로 상지의 동작에 초점을 맞추며, 미세동작 호전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뇌성마비 아동이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손 협응 능력, 적절한 자세,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고, 물건을 쥐거나 조작하기에 앞서 무엇인가가 손에 닿았을 때 느낌이 즐거워야 합니다. 작업치료를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 놀이 등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킵니다.

### ● 언어치료(Speech language Therapy)

뇌성마비 아동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에서 조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문제를 보이면서 전체 아동의 75~85%가 언어장애를 보입니다(Love&Webb,2001). 뇌성마비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이므로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다분야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도모하며, 주로 자세, 호흡, 발성, 조음 등의 치료가 진행됩니다.

5) 정진엽 외31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35 / 김향희, 신경언어장애, 시그마프레스 P398

### ● 스노젤렌치료(Snoezelen Therapy, 심리안정치료)

스노젤렌은 학문적으로 “쿵쿵거리며 냄새 맡는 것”과 “꾸벅꾸벅 조는 것”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를 합성한 것으로,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은은하면서 매혹적인 빛이 나는 공간 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치료활동입니다. 스노젤렌치료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격리수용, 보호, 관리의 관점에서 변화하여 그들도 만나는 사람, 접하게 되는 사물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스노젤렌치료는 뇌손상 환자 및 치매환자, 만성 통증 환자 등 심리적 이완이 요구되는 성인 및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보바스치료(Bobath Therapy,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의 기본개념은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를 관절운동, 자세잡기, 정상 운동패턴 촉진 등을 통해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 원시반사를 억제하며 자동반응을 촉진함으로써 운동 양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는 몸통 부위(근위부)에 있는 ‘키 포인트 조절점’에서 시작되며, 키 포인트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머리, 목, 척추, 어깨나 골반 등에 위치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키 포인트를 바탕으로 치료하는데, 조절점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각각 개인별로 다릅니다.

### ● 보이타치료(Vojta Therapy)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고유감각 자극을 주어 반사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상적 이동 동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극을 통해서 반사적 뒤집기(reflex turning)와 반사적 기기(reflex creeping)를 유발하는 방법을 쓰며, 주로 1세 이하 영아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경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고 치료 과정 자체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 ●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

신체와 환경의 여러 감각 정보를 뇌에서 조절하는 과정을 감각통합이라 하며, 이를 통해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치료법입니다. 전정(vestibular), 위치(proprioceptive) 및 촉각(tactile)이 특히 학습과 운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감각의 통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습, 행동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감각통합치료의 목적은 특정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의 인지, 기억, 운동 계획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학습장애 및 자폐증 치료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뇌성마비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수치료(Aquatic Therapy)

수치료는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가 적은 상태에서 자세 유지, 관절 움직임, 유산소 운동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로 특히 재활의학 분야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 ● 승마치료(Hippo Therapy)

1950년대에 소아마비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비교적 최근 뇌성마비 아동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승마를 통해 근 긴장도, 균형, 몸통 조절 등을 호전시킬 수 있고, 치료 매개 동물인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도움도 된다는 가정 하에 시작된 치료입니다.

### ● 연하치료(Deglutition Therapy)

연하치료란, 씹고 삼키는 능력의 손상으로 연하곤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식이조절 및 자세 조절을 통한 치료적 접근방법입니다. 삼키는 음식을 구강에서 위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50가지 이상의 신경 및 근육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만약 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적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며,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예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삼킴 시에는 액체나 음식물이 기도 혹은 폐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호흡과 잘 조화를 이루게 돕습니다.

### ● 심리치료(Psychology Therapy)

심리치료란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치료법으로 종류는 다양하며 보편적으로 미술, 놀이, 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사회경험의 폭이 제한되며, 이것이 아동시기 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2차적 손상인 통증으로 인한 강박증·예민성·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 상태 및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 뇌성마비장애인의 출현을 연구의 동향과 과제

## I. 서론

박 희 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뇌병변장애의 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이 시행령 별표1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뇌성마비가 뇌병변장애의 한 원인으로 간단히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이 용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뇌병변장애만 제시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나 특수교육 관련법에서는 지체부자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뇌성마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었다. 뇌성마비인은 1982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체부자유자에 포함되었다. 199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1에서 기존의 지체부자유자가 지체장애인으로 개정되어 뇌성마비인은 지체장애인에 포함되었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별표1에서 지체장애는 그대로 존치되면서 뇌병변장애가 장애 유형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1977년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지체부자유가 특수교육대상의 한 유형으로 명시된 이래 뇌성마비는 이 지체부자유에 포함되어 왔다. 그 후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기존의 지체부자유를 지체장애로 용어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특수교육 관련법에서 뇌성마비가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에 포함된 결과, 뇌성마비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독특한 장애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법률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 자료나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교육부, 2016),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는 거의 없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그런데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내지 지체장애에 포함되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장애인복지법에서 뇌병변장애인의 병변으로 구분된 뇌성마비는 외상성 뇌손상이나 뇌졸중과 과연 어느 정도 유사성이나 차별성이 있는가? 지체장애학생의 78.5%가 뇌성마비임에도(국립특수교육원, 2014) 불구하고 뇌성마비 그 자체에 대한 정보, 자료,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뇌성마비는 뇌졸중과 함께 뇌병변장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 그 장애가 개인의 삶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뇌성마비와 뇌졸중은 발생 시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다르다. 뇌성마비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이 대부분 선천적이거나 생후 2년 이내이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생아는 2,320,138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뇌성마비인은 5,160명으로 출현율은 약 2.2%였다. 이들 5,160명 중 출생전이나 출생 시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는 4,817명(93.4%)이며, 출생 후 발생한 사례는 343명(6.6%)로 나타나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출생 후에도 대체로 2세 이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다(ACPR, 2013). 반면에 뇌졸중의 경우, 대체로 55세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약 3/4이 65세 이후에 발병한다(<http://www.strokecenter.org/>). 우리나라의 2014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연령별 주된 진단명을 살펴보면, 10-19세 연령대에서 뇌성마비인의 비율은 51.3%인데 비하여 뇌졸중장애인의 비율은 5.2%였으며, 50-59세 연령대에서는 뇌성마비인의 비율은 9.2%인데 비하여 뇌졸중장애인의 비율은 70.5%였다.

뇌성마비인은 90% 이상이 출생전이나 출생 시 장애가 발생하여 인간의 발달기 동안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75년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1975)이 제정된 당시부터 뇌성마비가 발달 장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뇌졸중의 경우 뇌성마비와 기능상에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발달장애와는 전혀 무관하며, 발달기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뇌성마비가 대부분 선천적 혹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발생하고, 발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이러한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 등 국가 차원의 뇌병변장애인 조사결과는 뇌병변장애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뇌졸중과 뇌손상장애인에 대한 데이터의 영향으로 인하여 뇌성마비인에 대한 특성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현상마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뇌성마비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지원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다(박희찬, 박은영, 박세영, 2015).

외국의 경우, 뇌성마비 발생 원인과 관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정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성마비인의 출현율 및 등록,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호주(ACPR, 2013; Stanley & Watson 1992), EU(Cans, 2002; Germany et al., 2013; Virella et al., 2016), 아일랜드(Cussen et al., 1978; Mongan, Dunne, O’Nuallain, & Gaffney., 2006), 덴마크(Froslev-Friis et al., 2015; Glenting 1982), 스웨덴(Hagberg, Hagberg, & Olow, 1975; Himmelmann, Hagberg, & Uvebrant, 2010), 노르웨이(Hollung, Andersen, Wiik, Bakken, & Vik, 2015; Meberg, 1990), 영국(Blackburn, Read, & Spencer, 2012; Jarvis, Holloway, & Hey, 1985; Pharoah, Cooke, Rosenbloom, & Cooke, 1987), 프랑스(Cans, Billette, & Fauconnier, 1996; Johnson & King, 1989; Levy et al., 2006), 미국(CDC, 2012; Hurley et al., 2011; Yeargin-Allsopp et al., 2008) 등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의, 판정 절차,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교육 및 복지 정책 방향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장 기초적인 자료 및 연구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뇌성마비인 출현율(prevalence)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현율은 통상적으로 숫자를 제시된 후 비율로 표시되는 데, 예를 들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특정 주어진 시점과 특정 지역에서 뇌성마비인이 모두 몇 명이며, 그 숫자는 전체 연구 수에 비하여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http://www.cerebralpalsy.org>). 이 출현율은 특정 기간 안에 뇌성마비인이 몇 명이 발생하였는가에 초점을 두는 발생율(incidence)과는 다른 개념이다.

출현율은 장애를 이해하고 증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이승희, 2012). 출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수치로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교육, 전반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정책과 장애에 대한 예방과 연구 수행 방안에 대한 자료와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는 뇌성마비인을 위한 치료, 교육, 재활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 연구 등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뇌성마비 분야의 학문 발전과 현장에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 연구는 뇌성마비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립, 뇌성마비를 진단하고 장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마련, 진단평가를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 구비, 뇌성마비인의 등록 시스템 구축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관련 연구의 현재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 출현율 관련 연구 실태를 제시한다. 둘째, 유럽,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의 뇌성마비 출현율 연구 동향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뇌성마비 출현율 관련 연구를 위한 문헌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뇌성마비 또는(OR) 뇌병변을 주제로 학위논문 및 국내학술지 논문을 1차로 검색하였고, 결과 내 재검색으로 출현율을 주제로 2차 검색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Google에서 뇌성마비 및 뇌병변을 주제로 검색하여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뇌성마비 관련 연구과제 또는 실태조사 등을 파악하고 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국가에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특수교육실태조사 보고서도 문헌에 포함하였다.

둘째로 국외 문헌은 Smith-Sheedy 등(2009)의 뇌성마비 등록에 관한 국제 조사에 근거하여 국가명(Australia,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장애명(cerebral palsy), 출현율(prevalence)을 주제로 C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DB 통합검색 및 Google 검색을 통하여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의 자료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호주의 뇌성마비등록(<https://www.cpregister.com/>), 뇌성마비연맹(<https://www.cerebralpalsy.org.au/>), EU의 뇌성마비감독(<http://www.scpenetwork.eu/>), 미국의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http://www.cdc.gov/>)와 뇌성마비연구등록(<https://www.cpregistry.org/>) 등의 웹사이트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 관련 자료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 II. 우리나라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실태

### 1. 뇌성마비 판정기준

뇌성마비인 출현율은 장애에 대한 정의, 판정기준이나 도구, 조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 판정기준은 별도로 없고 뇌병변장애에 포함되어 있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일부로 되어 있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의 진단은 마비의 정도 및 범위, 팔·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뇌병변장애에 대한 진단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하나가 수정바델지수이다(정한영, 박병규, 강윤규, 편성범 외, 2007). 이 지수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중심이 된 척도이므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제약 정도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뇌성마비에 대한 판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대운동기능 분류시스템이나 대운동기능을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구수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뇌성마비인의 수 및 출현율에 대하여 이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인 심층조사로 구분되는 데, 장애인 심층조사에는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 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을 질문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특성과 관련하여 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마비 정도, 동반장애 유무, 최초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 원인, 주된 진단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장소, 출산방법)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에서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뇌성마비에 대한 출현율 조사 결과는 제5장 장애 출현율 및 장애인구수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도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7,269,000명이며, 장애인 출현율은 5.59%로 추정하였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출현율은 0.48%, 추정수는 234,675명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는 주장애가 뇌병변장애인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이 조사 보고서의 134쪽에서 또 다른 출현율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중복장애로 뇌병변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출한 자료로서 출현율이 0.62%, 추정수는 302,362명이었다.

이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뇌성마비인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 전체 연령으로 볼 때,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의 8.2%를 차지하며, 구성 비율의 순서로는 69.5%인 뇌졸중, 11.2%인 뇌손상 다음이다. 이러한 비율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전체 뇌병변장애에서 뇌성마비인은 비율이 0~9세에는 20.0%, 10~19세에는 51.3%, 20~29세에는 34.5%, 30~39세에는 42%, 40~49세에는 25.5%였다.

이 실태조사에서의 결과에 의하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뇌병변장애인 출현율인 0.62%의 8.2%에 해당하므로 0.051%로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뇌성마비인 출현율 0.051%는 뇌성마비 관련 국외 전문 논문이나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성마비 출현율인 0.2~0.3%에 비하여 1/4 이하로 낮은 비율이다.

### 3. 특수교육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교육 과정 및 방법 모색, 교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이 특수교육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학교(급) 관리자 및 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교육과정, 서비스, 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최근 2014년에 실시된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특성을 조사하였다. 뇌성마비는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실태가 조사되었으며 전체 지체장애인 10,814명 중 8,491명으로 78.5%였다. 그 외의 지체장애 유형으로는 근이양증 5.8%, 척추손상 3.2%, 경련장애 2.1% 등이 있었다. 따라서 특수교육실태조사를 통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뇌성마비인을 위한 교육이나 재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 4. 출현을 선행연구

뇌성마비인의 출현율과 관련된 국내의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6년 4월 현재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 통합검색에서 키워드 ‘뇌성마비’로 검색된 학위논문은 919개, 국내학술지 논문은 1,410개였으나, 결과 내 검색에서 키워드 ‘출현율’로 재검색하면 학위논문 3개, 국내 학술지 논문 1개가 있었다. 그러나 이 4개의 연구들도 뇌성마비 출현율을 주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이명희, 유영준, 백은령, 최복천, 김기룡, 2011),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방안 연구(최복천, 이명희, 임수경, 조혜희, 2013), 뇌병변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및 지원 정책 방향 연구(박희찬, 박은영, 박세영, 2015)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구는 찾을 수 없다. 이는 출현율에 대한 정서 행동장애(이승희, 2012), 자폐성장애(정동영, 김형일, 정동일, 2003), 학습장애(강위영, 정대영, 1986; 여승수, 2013), 청각장애(최성규, 1997), 언어장애(송윤경, 2010) 등 타 장애영역에서 출현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상과 같이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연구 수행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의, 판정 절차, 도구, 데이터 수집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국에서의 사례는 이러한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외국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동향

#### 1. 유럽

유럽뇌성마비감독(Surveillance of Cerebral Palsy in Europe: SCPE)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뇌성마비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분석하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SCPE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뇌성마비인을 등록하는 협력체로서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유럽 전역에서 소아과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 역학자, 치료사 등이 함께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다. SCPE 네트워크의 목적은 뇌성마비의 발생과 관련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뇌성마비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개발하고, 뇌성 마비 아동에 대한 치료와 돌봄의 기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http://www.scpenetwork.eu/>).

SCPE(2000)에서는 유럽 8개국의 14개 뇌성마비 센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뇌성마비 관련 조사나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각 나라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 뇌성마비에 대한 포함 및 제외 기준 등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SCPE에서는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로, “일련의 장애들을 통칭한 것이며; 움직임과 자세 및 운동 기능의 장애와 연관되며; 영구적으로 지속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비진행적인 간섭, 손상, 기형에 의하며; 이러한 간섭, 손상, 기형은 발달중이거나 미성숙한 뇌에 의한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다(SCPE, 2000). 뇌성마비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의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련의 운동장애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이다.

SCPE에서는 참조 및 훈련 매뉴얼(Reference and Training Manual)을 개발하여 유럽 각국에서의 뇌성마비인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http://www.scpenetwork.eu/>). 이 매뉴얼은 뇌성마비 등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의 질문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으로 답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

1998년에 SCPE가 설립된 이후 유럽의 8개국 14개 뇌성마비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출현율을 산출하였다(Cans, 2002). 1976년부터 1990년까지의 태어난 아동은 모두 6,502명이었으며, 출현율은 0.208%였다. 각 센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별 출현율은 차이가 있었으며, 범위는 0.149%에서 0.263% 까지였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도의 뇌성마비 아동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출현율이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1983년의 출현율과 거의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었다.



SCPE 외에 뇌성마비인 출현율에 관한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lk, Parkes와 Hill(2006)의 연구에서는 북아일랜드에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출생한 415,936명 중 뇌성마비로 등록된 경우는 909명으로 출현율은 0.219%였다. Cansu, Secil과 Tezcan(2006)의 연구에서는 터키의 2세에서 16세 까지 아동 41,8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86명이 뇌성마비아동으로 출현율은 0.44%였다. Himmelmann, Beckung, Hagberg와 Uvebrant(2006)에 의하면,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서부 스웨덴에서 탄생한 뇌성마비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출현율은 약 0.2%였다. Johnson(2002)은 유럽의 11개 뇌성마비 관련 센터에서의 출현율을 종합하여 0.208%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202~0.214%로 보고하였다.

## 2. 호주

호주뇌성마비등록(Australian Cerebral Palsy Register: ACPR)은 전산으로 된 데이터베이스로서 호주 내 7개의 주나 영토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코드 번호에 의하여 저장되는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각 주나 영토들이 협력하여 뇌성마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ACPR은 뇌성마비의 분포, 빈도, 장애 정도, 뇌성마비의 원인과 결정 인자, 뇌성마비에 대한 예방 전략의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평가할 있도록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ACPR의 정보들은 뇌성마비 발생을 줄이고 뇌성마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ACPR 자료는 ① 뇌성마비에 대한 모니터링, ② 뇌성마비인들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재 방안 마련, ③ 뇌성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발견, ④ 미래의 예방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 보고서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뇌성마비인 출현율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Cerebral Palsy Alliance Research Institute, 2013). 조사 집단(cohort)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태어난 아동으로서 아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성마비에 포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가지에 의한다(Rosenbaum et al., 2007; Rosenbaum, Paneth, Leviton, Goldstein, & Bax, 2006; Mutch, Albeman, Hagberg, Kodama, & Perat, 1992): ① 일련의 그룹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② 발생 이후 변화하지 않고 영구적인 증상이며, ③ 움직임, 자세, 운동기능의 장애와 관련되며, ④ 비진행적인 방해, 손상, 기형에 원인이 있으며, ⑤ 그러한 방해, 손상, 기형이 뇌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0.21%였다(95% 신뢰수준으로 0.20~0.22%). 뇌성마비인 중 94.4%는 선천적이나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출현율은 0.20%로 추정되었다. 나머지 5.6%는 뇌손상 등으로서 출생 후 28일 이후에 인지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하여 발생했으며, 뇌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의 뇌혈관 손상(34.2%),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26.3%), 사고 등이었다(Cerebral Palsy Alliance Research Institute, 2013).

뇌성마비인 중 중복장애의 비율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뇌전증은 30%, 지적장애 50% 미만, 언어장애 60%, 시각장애 40%, 청각장애 10% 등이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맹이 4.8%,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 관련된 경우가 36.5%였다. 농은 2.4%, 청각장애가 어느 정도 관련된 경우는 8.1%였다.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는 24.5%, 언어장애가 어느 정도 관련된 경우는 34.6%였다. 뇌전증은 28.9%였으며, 지적장애의 경우 경도 10.8%, 중등도 8.5%, 최중도 12.1%, 장애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25.8%였고,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는 42.8%였다.

### 3. 미국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뇌성마비인의 출현율과 발생율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원이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났다. 이 연구들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유형이나 모양의 뇌성마비인이 가장 많은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Yeargin-Allsopp, Murphy, Oakley와 Sikes (1992)은 1985년과 1987년의 연구에서 아틀란티스 5개 카운티에서 10세 아동의 뇌성마비 및 다른 발달장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89,534명의 아동 중 204명이 뇌성마비인으로 진단되어 출현율은 0.23%였으며 경련성(spastic) 유형의 비율이 61%로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진단과 관련되는 학교 문서뿐만 아니라 병원 등의 추가 문서 등도 비교 검토되었다. Tanya, Sally, Rachel과 Kim (2006)은 아틀란티스 5개 카운티에서 1996년과 2000년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8세 아동 중 뇌성마비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뇌성마비 외에 다른 4개의 발달장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6년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 0.36%였고 2000년 연구에서는 출현율이 0.31%였다. 2000년에 비하여 1996년의 출현율이 더 높아 1996년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Yeargin-Allsopp, Van, Doernberg, Benedict, Kirby와 Durkin (2008)은 미국의 앨라배마 주 북부지역, 조지아주 아틀란티스, 위스콘신주 서동부지역의 8세 아동들 중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14,897명이었으며,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0.36%였다. 이 연구에서 뇌성마비 관련 자료는 병원에서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주에서는 학교 자료도 참고하였다.

2008년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앨라배마, 조지아, 미주리, 위스콘신의 4개 주에서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뇌성마비 출현율은 0.31%였다(Christensen et al., 2014). 이 연구에서 경련성(spastic) 유형의 비율은 77.4%로 가장 높았다. 또한 58.2%는 독립보행이 가능하였으며, 11.3%는 손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걸었고, 30.6%는 보행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의 41%가 뇌전증이 있었으며 6.9%가 자폐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koui, Coutinho, Dykeman, Jetté와 Pringsheim (2013)은 1985년 이후에 수행된 뇌성마비 출현율 관련 49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현율은 0.211%였으며, 95%의 신뢰수준에서 출현율은 0.198%에서 0.225%사이였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출현율 연구는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해석되었는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났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Northwestern University,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가 연합하여 뇌성마비연구등록(Cerebral Palsy Research Registry, CPRR)을 설립하여 국가 수준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Hurley et al., 2011).

이상의 유럽, 호주, 미국 등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뇌성마비의 출현율을 0.2%로 설정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출현율 연구는 뇌성마비인에 대한 정의, 판정절차, 등록 시스템 개발, 기관간의 연계 등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출현율은 국가의 의료 및 보건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출현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시스템 개발, 정책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V. 우리나라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의 과제

이 연구는 뇌성마비인 출현율에 대한 국내의 연구 실태, 외국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동향, 향후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Ⅱ장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실시된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나, 제Ⅲ장에서와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EU의 SCPE, 호주의 ACPR, 미국의 CPRR 시스템이 출현율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즉, EU, 호주, 미국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뇌성마비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뇌성마비인에 대한 개념정의 및 판정기준과 절차 마련, 등록, 출현율 및 종단적 경향 분석, 서비스 요구 분석과 정책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로 뇌성마비인의 판정기준 개발, 출현율과 특성 조사 실시, 웹 기반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의 세 측면을 살펴본다.

### 1. 뇌성마비인 판정기준 개발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 호주, 미국 등과는 달리 국가차원에서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출현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을 통해서도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을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뇌성마비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의 원인의 하나로만 언급되고 있어 뇌성마비인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 제시 및 판정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뇌성마비인의 출현율, 뇌성마비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과 방향, 교육과 재활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뇌성마비인에 대한 판정기준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뇌성마비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나 평가도구 개발은 출현율을 조사하는 기초가 되며, 출현율 조사에 대한 정확성, 체계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SCPE에서는 뇌성마비장애 판정에 관한 참조 및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판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도 유럽의 SCPE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뇌성마비연맹(Cerebral Palsy Alliance)에서 운영하는 뇌성마비연구소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등록, 예방,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https://www.cerebralpalsy.org.au/>). 또한 미국에서도 2006년에 뇌성마비 연구등록에 대한 예비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였다(Hurley et al., 2011). 이러한 외국의 연구동향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뇌성마비인의 판정 기준을 연구 개발하여 출현율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뇌성마비인 출현율과 특성 조사 실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실태조사 및 특수교육실태조사를 실시 할 때 뇌성마비는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에 포함되는 관계로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특성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별도로 출현율, 장애 정도, 특성, 경제 상태, 복지지원 상황, 사회참여 상황, 복지육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뇌성마비인의 발생, 특성,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실시되고 출현율이나 장애특성에 근거한 정책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수교육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과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뇌성마비인은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별도로 교육적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 교육성과 등이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장애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웹 기반의 뇌성마비인 연구 시스템 개발

뇌성마비인 판정기준 개발이나 뇌성마비인 출현율과 특성조사 실시 등 앞에서 살펴본 과제들은 뇌성마비인 웹 기반 연구 시스템 개발에 통합되어 해결될 수도 있다. 뇌성마비인 출현율 등의 연구 시스템의 사례는 유럽의 SCPE, 호주의 ACPR, 미국의 CPR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뇌성마비인의 등록과 관련하여 뇌성마비의 정의, 뇌성마비의 포함 및 제외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변인 설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매뉴얼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들은 대부분 뇌성마비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출현율 조사 및 뇌성마비 장애 정도 경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뇌성마비인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개발하며,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의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mith-Sheedy et al., 2009).

이 SCPE, ACPR, CPRR 시스템에서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특성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정보들로는 생년월일, 성, 어머니 생년월일, 태아의 수, 임신기간, 출산아 몸무게, 진단/운동 유형, 뇌전증/경련, 대근육운동 기능 분류체계(GMFCS), 지적 기능, 출생 후 원인/시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다. 아울러 이들 시스템에서는 뇌성마비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호주의 뇌성마비연맹에서는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정보, 중재, 치료, 서비스, 자원, 연구,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뇌성마비인 자신, 보호자 및 가족, 연구자, 정책 담당자 등이 언제나 지원을 받거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s://www.>

cerebralpalsy.org.au/).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뇌성마비인 등록 및 연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뇌성마비인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치료나 교육 등 중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건강, 운동, 인지, 생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계획을 세우며, 생애 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및 정책 개발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관련 연구 실태를 제시하고, 유럽,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향후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가 법적으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장애인실태조사 및 특수교육 실태조사 등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거의 확보할 수 없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뇌성마비인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 개발에도 한계가 크다.

둘째,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는 뇌성마비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어 판정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뇌성마비인 출현율은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0.2%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뇌성마비인에 대한 등록 시스템 구축, 발생 경향성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서비스 및 정책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 판정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출현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의 SCPE, 호주의 ACPR, 미국의 CPRR 등을 참고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뇌성마비는 대부분이 선천적 혹은 조기에 발생하여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고, 중도·중복의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현율 등의 데이터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뇌성마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 [의사소통]

### ●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주의 깊게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 뇌성마비장애인은 안면근육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지가 흔들리며 경직되는 모습, 어눌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능력이 낮으리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 언어장애가 있는 뇌성마비장애인은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발음에 곤란을 느끼고, 목, 사지, 안면근육의 경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 만약 뇌성마비장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복해서 다시 물어봐도 괜찮으니 천천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소리 내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 휴대폰 문자나 필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으며 장시간 대화가 필요할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및 간단하게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아 기본적인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판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

### ● 노우테크(No-tech)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전자적 요소가 없이 교사나 보호자가 직접 상징을 출력하고 오려서 붙여 만드는 의사소통 책 또는 의사소통 판을 의미



### ● 로우테크(Low-tech)

음성을 녹음해서 사용하는 단순한 전자 의사소통 도구로, 녹음한 음성을 저장하였다가 재생하여 사용하며, 종류에 따라 저장시간이 15초에서 300초까지 다양하고 단어나 문장 재생이 가능



### ● 하이테크(High-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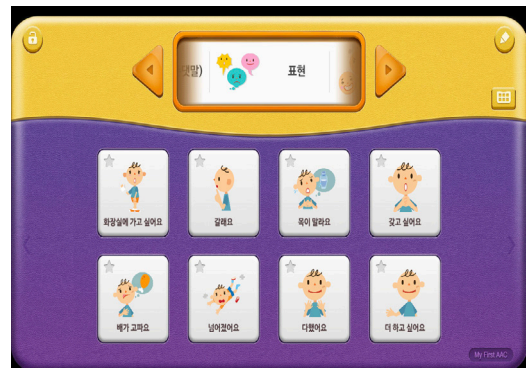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독 도구부터 어플까지 다양하며,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을 합성하여 출력가능. 최근 스마트기기 발달로 어플형 프로그램이 출시





## ● 어플(나의 AAC)

안드로이드 / IOS에서 모두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통판으로 말하기, 상징으로 말하기, 문자로 말하기, 이야기 만들기로 구성



## [이동지원 시]

### ●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주세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장애인을 도울 때에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근긴장도가 올라가 휠체어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출발하거나 또는 정지 등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보행이 가능하나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 등에서는 부축이 필요한지 확인 후 도움을 드립니다.
- 수동휠체어를 타는 뇌성마비장애인은 스스로 바퀴를 밀어 이동하지만, 간혹 고르지 못한 바닥·경사로·높낮이의 차이가 있거나 틈이 있는 곳에서는 스스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그 외에 유의사항

- 뇌성마비장애인은 근육의 강직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외관 상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성마비장애인을 대할 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세요.
- 과잉보호나 과잉염려, 과도한 친절은 뇌성마비장애인에게 동정이나 참견이 될 수 있으니 선불리 도움을 주기 보다는 기다리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한 후 행동합니다.
- 휠체어 등 보조기기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신체 일부라 생각하고 붙잡거나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 다과 및 음료수 접대 시, 포크나 빨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뇌성마비장애인의 이동수단이 되는 보조기기는 대부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좁은 문이나 협소한 구간보다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 2



## 뇌성마비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경제적 지원

42

의료·재활·건강 지원

59

임신·양육·교육 지원

75

일상생활 지원

107

주거 지원

120

취업 지원

139

보조기기 지원

147

법률 지원

153

문화여가 지원

156



# 1. 경제적 지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N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가능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 내용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2,0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기준**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915,910	6,176,158	7,072,029	7,964,369	8,845,452	9,716,682	10,585,277
재산기준	6억원						

**신청기간**

연중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 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이하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li> <li>•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li> </ul>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만 6,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부 가 급 여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장애아동수당

###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장애인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1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 지급(매월)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http://www.bokjiro.go.kr/pension))

##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수당

###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 내용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 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283-0445, [www.adongcda.or.kr](http://www.adongcda.or.kr))



## 중증장애인 이름통장(서울시)

### 대상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1982.01.01~2006.12.31)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가구

### 내용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통장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본인 저축액은 가입 당시 선택
매칭지원금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매칭 지원금은 서울시 지원(정액)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매월 적립 시
만기적립금(3년)	900만원+ 이자	1,080만 원+이자	1,260만 원+이자	(총36회)

**방법**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

- 다산콜센터(☎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청년희망키움통장****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청년

**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망키움통장(Ⅰ, Ⅱ)

### 대상

구분	가입기준
Ⅰ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li> <li>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li> </ul>
Ⅱ 유형 (차상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li> <li>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li> </ul>

###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지급</li> <li>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li> </ul>
Ⅱ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li> <li>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li> </ul>
지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Ⅰ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li> <li>Ⅱ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li> </ul>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내일키움통장

###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내용

매월 5만/10만/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537만 원, 최대 1,620만 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녀장려금

### 대상

만 18세 미만(2002.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0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 근로장려금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0.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20년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 방법

-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 수신료 전액 면제</li> </ul>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li> <li>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li> <li>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li> <li>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li> <li>114 안내요금 면제</li> <li>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 당 1회선)</li> </ul>	<p>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p>
교통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li> </ul> </li> <li>지하철·전철 무료 이용</li> <li>공영버스 무료 이용</li> </ul>	<p>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p>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li> </ul> </li> </ul>	<p>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p>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li> <li>-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li> <li>-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li> </ul>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영주차장 요금 감면</li> <li>-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li> <li>-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li> </ul>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li> </ul>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li> <li>- 지자체별로 지원</li> </ul>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li> </ul>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li> <li>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li> <li>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li> </ul>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li> </ul>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li> </ul>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li> </ul>	코레일(☎1544-7788)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li> <li>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 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li> <li>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li> <li>114번호안내 면제</li> </ul>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 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 월 최대 2만 3,6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li> </ul>							
각종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하수도요금 감면</li> </ul>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li> </ul>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요금 감면</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계급여· 의료급여</td> <td>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td> </tr> <tr> <td>주거급여· 교육급여</td> <td>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li> </ul>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수신료 면제</li> <li>-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li> </ul>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li> <li>-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li> </ul>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li> </ul>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li> </ul>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li> <li>•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li> </ul>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경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의료·재활·건강 지원



### 장애정도 심사검사비 지원

####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원

####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그 외의 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 지급

####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알려드립니다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 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제도

###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li> <li>•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li> <li>•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li> </ul>
건강비	<p>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p> <p>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p>
임신·출산 진료비	<p>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p>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방법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의료급여제도

###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p>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li> </ul> <p>※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p>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p>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p> <p>※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p>
요양비	<p>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p> <p>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p>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7p)</li> </ul> </li> <li>•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li> <li>-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li> <li>-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li> <li>-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li> <li>-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li> </ul> </li> </ul>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구분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 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대상**

지원내용	상세내용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재난적의료비 지원

###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건강검진제도

###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li> <li>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li> </ul>																											
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li> <li>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li> </ul> </li> <li>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li> <li>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 <li>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 <li>폐암 : 만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관(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li> </ul> </li> </ul>																											
영유아 건강검진	<p>만 6세 미만의 영유아</p> <p>-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차) 생후 14~35일</th> <th>(2차) 4~6개월</th> <th>(3차) 9~12개월</th> <th>(4차) 18~24개월</th> <th>(5차) 30~36개월</th> <th>(6차) 42~48개월</th> <th>(7차) 54~60개월</th> <th>(8차) 66~71개월</th> </tr> </thead> <tbody> <tr> <td>건강검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강검진</td> <td>-</td> <td>-</td> <td>-</td> <td>○ (18~29)</td> <td>-</td> <td>○ (42~53)</td> <td>○ (54~65)</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건강검진	○	○	○	○	○	○	○	○	구강검진	-	-	-	○ (18~29)	-	○ (42~53)	○ (54~65)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건강검진	○	○	○	○	○	○	○	○																				
구강검진	-	-	-	○ (18~29)	-	○ (42~53)	○ (54~65)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 내용

구분	목표질환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li> <li>•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성·연령별 검사항목</th> <th>실시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총콜레스테롤</td> <td></td> </tr> <tr> <td>HDL콜레스테롤</td> <td>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td> </tr> <tr> <td>트리글리세라이드</td> <td></td> </tr> <tr> <td>LDL콜레스테롤</td> <td></td> </tr> <tr> <td>B형간염</td> <td>만 40세</td> </tr> <tr> <td>골밀도검사</td> <td>만 54, 66세(여성)</td> </tr> <tr> <td>인지기능장애</td> <td>만 66세 이상 2년 1회</td> </tr> <tr> <td>정신건강검사(우울증)</td> <td>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td> </tr> <tr> <td>생활습관평가</td> <td>만 40, 50, 60, 70세</td> </tr> <tr> <td>노인신체기능</td> <td>만 66, 70, 80세</td> </tr> <tr> <td>치면세균막검사</td> <td>만 40세</td> </tr> </tbody> </table>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만 40세	골밀도검사	만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만 40세																							
	골밀도검사	만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 시행)</li> <li>•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li> <li>•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li> <li>• 유방암 : 유방촬영술</li> <li>•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li> <li>•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li> </ul>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 상태 등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장애친화 건강검진

### 대상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내용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하여 7개소 운영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00여 개소) 예정

### 방법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전국 7개소) 방문하여 검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서울] 서울의료원 (☎02-2276-7000)
- [경북] 안동의료원 (☎054-850-6277~8)
- [강원] 원주의료원 (☎033-760-4550)
- [경남] 마산의료원 (☎055-249-1234~6)
- [부산] 부산성모병원 (☎051-933-765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777)
- [제주] 서귀포의료원 (☎064-730-3020)



## 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내용

구분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 차상위

###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내용	상세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 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 교육, 2차장애 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대상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내용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 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0개소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을 제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 대상

지역 주민

###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자주 하는 질문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 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임신·양육·교육 지원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 내용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일부 보건소 이용 시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무료접종 지원

※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으로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방법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고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일부 보건소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영양플러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90만 1,032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입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1년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함천군)

※ 21년 4월 현재 30곳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 '21.5.22 출산(예정)일 이후 대상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주 하는 질문

####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 내용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영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일부터 경감 적용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다만,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은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턴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장애아동 양육수당****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0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5만 1,000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 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구분	생후 14~35일	4-6 개월	9-12 개월	18-24 개월	30-36 개월	42-48 개월	54-60 개월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
구강 검진	-	-	-	○ (18~29)	-	○ (42~53)	○ (54~65)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 2008년생)

## 대상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종)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만 4~6세)
	Tdap/Td	1	6차(만 11~12세)
폴리오	IP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만 4~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 2세 이상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2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
수두	VAR	1	1회(생후 12~15개월)
A형간염	HepA	2	1~2차(생후 12~23개월)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5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LJEV (약독화 생백신)	2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2	1~2차(만 12세)
인플루엔자	IIV	1**	매년 1회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가능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방법**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방문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돌봄서비스

###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연 84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050원)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040원)		A형 (2014.1.1 이후 출생)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10,243원 (85%)	1,807원 (15%)	9,038원 (75%)	3,012원 (25%)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7,230원 (60%)	4,820원 (40%)	6,025원 (50%)	6,025원 (50%)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라형	150% 초과	-	10,040원 (10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6,025원 (50%)

유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0,040원)				종합형 (시간당 13,050원)			
		A형 (2014.1.1. 이후 출생)		B형 (2013.12.31. 이전 출생)		A형 (2014.1.1. 이후 출생)		B형 (2013.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8,534원	4,516원	7,530원	5,520원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6,024원	7,026원	2,008원	11,042원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1,544원	1,506원	11,544원
라형	150% 초과	-	10,040원	-	10,040원	-	13,050원	-	13,050원

###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 - 2514)

## ✓ 알려드립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 방법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http://central.childcare.go.kr))





## 다함께 돌봄 사업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제공 예시(센터 여건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상이함)

구분	시간	프로그램	
방학중	09:00-10:00	출석확인, 자유놀이	
	10:00-11:00	독서지도, 숙제 학습지풀기	
	11:00-12:00	프로그램 또는 동영상(EBS)	
	12:00-13:00	점심시간 및 휴식	
	13:00-14:00	자유놀이(야외 및 실내놀이)	
	14:00-14:50	독서지도, 숙제 학습지풀기	
	14:50-15:30	간식시간 및 휴식	
	학기중	15:30-16:00	프로그램
		16:00-17:00	프로그램
		17:00-18:30	자유놀이, 귀가지도
		18:30-19:30	저녁식사
	일시 돌봄	19:30-21:00	저녁돌봄(돌봄서비스연계등)

※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0만 원 이내 본인부담

### 방법

- 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누리집([www.dreamstart.go.kr](http://www.dreamstart.go.kr))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http://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60만 5,801 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85만 2,847 원) 이하

###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li> <li>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21.5월~)</li> </ul>
추가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li> <li>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21.5월~)</li> <li>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21.5월~)</li> </ul>
학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li> </ul>
생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li> </ul>

###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 알려드립니다

####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발달재활 서비스

###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0만 8,297원, 지역 34만 1,915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시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만 6,000원	-	-
중학생	37만 6,000원	-	-
고등학생	44만 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 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급식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언어발달 지원

###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0만 3,558원, 지역 21만 6,474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눈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문의

교육부(☎044-203-6561)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 문의

교육부(☎044-203-6561)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대상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내용

매월 장학금(25만 원~45만 원)을 장학금 카드로 지급하며, 1:1멘토링, 멘토링캠프, 진로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방법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를 통해 온라인 신청(<https://eduman.kosaf.go.kr>)하여 서류 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문의

- 소속 학교
-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고교학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교육 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 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9887)



## 장애인 정보화교육

### 대상

등록 장애인

###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방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한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 에이블	www.eduable.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li> <li>•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li> <li>•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 자료 제공</li> </ul>

###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평생교육바우처

###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내용

지원인원 1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 원 재충전

※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a href="http://www.lilcard.kr">www.lilcard.kr</a> 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 알려드립니다****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란?**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4.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등록신청

####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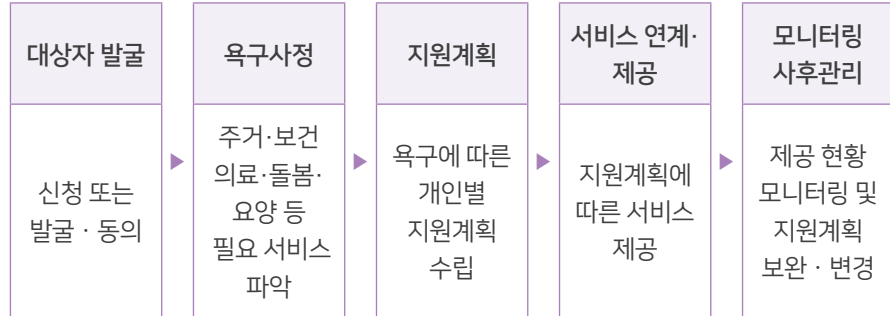
병원·시설보다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 연계·통합 안내 및 제공

※ 각 지자체별로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돌봄, 요양 및 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 연계·제공

### 방법

• 신청기관 : 16개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등

※ 지역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다양한 모형 개발·검증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추진, 16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중('19.6~'21.12), 향후 단계적 전국 확대 예정



## 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선도사업 지자체	부서	문의
<b>1.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b>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	☎062-350-4839
경기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9011
충남 천안시	복지정책과	☎041-521-5361
전북 전주시	통합돌봄과	☎063-281-2831
경남 김해시	시민복지과	☎055-330-4683
부산 북구	희망복지과	☎051-309-5112
부산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051-605-4781
경기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2865
경기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031-590-8675
충북 진천군	주민복지과	☎043-539-4322
충남 청양군	통합돌봄과	☎041-940-2942
전남 순천시	여성가족과	☎061-749-6231
제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852
<b>2.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b>		
제주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3042
대구 남구	행복정책과	☎053-664-2548
<b>3.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자체</b>		
경기 화성시	보건행정과	☎031-5189-3293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대상

등록 장애인

###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일상생활지원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이동지원 분야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활동지원

###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4만 2,000원 ~ 최대 673만 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2만 2,000원), 자립준비(28만 1,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8만 1,000원)
  -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300점(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수급자이고, 주 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로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제외)

### 내용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밤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순회돌봄(야간 순회방문 서비스 제공인력)가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위기상황 대비 서비스를 제공
- 방문시간 및 횟수 : 22시~익일 6시, 2~3회 순회방문(1회 약 10~30분 소요)
- 돌봄 서비스 내용 : 체위변경, 배뇨도움(벨라톤 사용), 대소변 지원, 응급상황 확인 등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 알려드립니다

### 2021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2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
3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4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4-8119
5	구로구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66-0233
6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7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8	동작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9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10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63-3042
11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12	송파구	송파구 방이복지관	02-3432-0477
13	양천구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02-2698-9191
14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02-389-7708
15	종로구	사회적협동조합 종로돌봄센터	02-3673-3966
16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 장애인콜택시(서울시)

###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
- 외국인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 만13세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 제외

### 내용

중증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 운행차량
  - 리프트, 슬로프 장착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미니버스, 서울장애인버스
- 운행시간
  - 24시간 체계 : 주간 07:00~22:00(15시간) / 야간 22:00~익일07:00(9시간)
-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 당일 진료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 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 초과 ~ 10km 이내 km당 280원, 10km 초과 시 km당 70원
- ※ 시간·지역 할증없음. / 100원미만 절사

### 방법

전화, 문자,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 문의

-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 인터넷콜센터 누리집(calltaxi.sisul.or.kr) / 문의전화(☎1588-4388)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 평가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 알려드립니다

####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4)

## 자주 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취득교육(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받을 수 있고,
-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운전교육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교육 시간은 8~10시간(4~5일) 실시합니다.
- 교육 비용은 무료이나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 부담입니다.
- 교육 장소는 운전면허취득교육의 경우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그 외 교육은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예: 집 주변도로, 회사 출퇴근길 등)으로 찾아가서 실시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교육은 지원하지 않고, 1종 및 2종보통 자동 및 수동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Youtube(유튜브)-국립재활원-운전교육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운전, 운전교육 및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운전교육 전·후 비대면(온라인)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 Youtube(유튜브) - 국립재활원 - 운전교육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 장애인 자립자금 대어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초과 100%(4인 기준 487만 6,29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용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용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 이상 ~ 만54세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자격기준 내 대상자

**내용**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구입비의 월 50% 지원(최대 월 5만원 한도)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거주지 인근 수행기관 및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에 상시 신청

※ 대상자 선정 심의 후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에서 개별통보

※ 수행기관 - 서울 내 장애인복지관 25곳(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 확인)

- 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③ 검사결과서(수정바델지수-MBI,K-MBI/일상생활동작지수-FMI중 택1)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 1부. (2020.01.01.이후 발급서류)



- ④ 복지카드사본 앞면, 뒷면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⑤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
  - ⑥ 통장사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증빙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070-4242-5997, 5998 / www.together-seoul.org)



## 서울시 최종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 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등록자 중(최근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성인기 최종증 뇌성마비장애인
- 최종증 장애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소외된 뇌성마비장애인
  - ※ 현재 정기적으로 시설입소 중이거나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자는 미대상

### 내용

- 주 4~5회 이용, 이용료(수급자 면제, 차상위50%감면) 개별부담, 식대 별도
- 돌봄서비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제공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2-2135-3629)



## 알려드립니다

### 2021 낮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4~8
2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3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4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2, 4415
5	은평구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	02-351-3982

## 5. 주거 지원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21년 시행)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에너지바우처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6.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6.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 지원제외

- ① 보장시설 수급자
-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7,000원	1만 원	1만 5,000원	1만 5,000원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만 9,500원	12만 6,500원	15만 5,500원	17만 6,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총 지원금액	9만 6,500원	13만 6,500원	17만 500원	19만 1,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 내용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 방법

지자체(시군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자주 하는 질문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sup>2</sup> → 197kWh/m<sup>2</sup>)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낮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052-920-0525)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 문의

LH마이홈(☎1600-1004)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 문의

NH마이홈(☎1600-1004)



## 영구임대주택 공급

###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NH마이홈(☎1600-1004)





## 국민임대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
- 총자산 :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 행복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인 무주택자로서</li> <li>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li> <li>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li> </ul>	<p>(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p>
(예비) 신혼 부부·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li> <li>(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li> <li>(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li> </ul>	<p>(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p>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li> </ul>	<p>(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p>
주거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li> </ul>	<p>(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p>
산단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li> </ul>	<p>(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p>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창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li> </ul>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li> </ul>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li> <li>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li> <li>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li> </ul>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120%(3인 기준) 748만 8,624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지원)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709만 4,205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무기(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 해도 무방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 ⑥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긴급 주거지원

###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 문의

NH마이홈(☎1600-1004)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 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 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방법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대상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1,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 가능

구분	지원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 I	<p>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li> <li>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li> </ul> <hr/> <p><b>지원</b> 수도권에서 1억 3,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b>예시</b> 경우 임대보증금 675만 원, 월임대료 21만 원 수준</p>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p>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li> <li>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li> </ul> <hr/> <p><b>지원</b>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b>예시</b>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p>
다자녀 전세임대	<p>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li> <li>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li> </ul>
소년 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p>만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 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p>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맞벌이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고령자형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대상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형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1600-1004)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대상

-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 내용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내용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 (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원(수도권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li> <li>•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li> <li>• 희망키움통장 가입자</li> <li>•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li> <li>• 주거급여 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li> <li>※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li> </ul>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 6. 취업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내용

구분	지원 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82만 2,480원 12월 : 170만 4,760원
	시간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일 4시간 주 5일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8만 8,32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 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5만 6,010원 12월 : 108만 1,38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14만 2,320원 12월 : 106만 8,510원

####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구분	지원대상
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I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 내용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1단계)

###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1개월  
이내

- 장애인 전문상담 (최소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급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훈련</li> <li>• 중증장애인 지원고용</li> <li>•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li> </ul>	훈련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3개월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li> <li>•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월 50만 원, 최대 6개월)</li> <li>•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li> <li>•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li> </ul>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주자 등

### 내용

참여기간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활근로

###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

### 내용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프로그램 제공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근로 지원인 지원

###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 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방법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형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li> <li>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li> </ul>

※ '21년 한시적으로 월 18만 4,000원의 특별장려금 추가 지원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및 2,7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 훈련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 센터	월 10만 원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60)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 알려드립니다

###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7. 보조기기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http://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 알려드립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http://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li> <li>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li> </ul>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 <운행 전>

-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 <운행 중>

-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내용

34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코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소변수집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장애인용의복, 전동침대
지적·뇌병변·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 ✓ 알려드립니다

###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구를 만나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http://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조기기 관련 공적 자원 및 문의처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	보조기기 34품목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	9종 88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장애인(개인부담 20%) 수급자 및 차상위 (개인부담 10%) 국가유공자	시각 60종, 지체·뇌병변 24종, 청각·언어 32종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산재보험급여 재할보조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보조기기 52품목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보조기기 27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영역	사진	설명
자세유지 보조기기		올바른 자세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 종 벨트 및 서포트 장치를 통해 앉기, 서기, 눕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b>제품</b>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피더시트 등
이동 보조기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휠체어, 워커, 전동스쿠터 등
일상생활 보조기기		장애인이 식사, 용변, 목욕, 의복착용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보호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목욕의자, 이동용 변기, 식사보조도구, IoT기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b>제품</b> gotalk, 마이토키, 키즈보이스, 어플(스마트AAC, 진소리) 등
작업 및 학습 보조기기		장애인의 직업,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작업테이블, 필기보조도구, 페이지터너 등

영역	사진	설명
감각 보조기기		시·청각 장애인이 컴퓨터, 독서 및 일상생활에서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b>제품</b>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S/W, 음성증폭기 등
여가 보조기기		장애인의 여가, 레포츠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b>제품</b> 특수자전거, 스포츠용 휠체어, 카드혼합기, 해변용휠체어 등
IT 접근 보조기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세한 신체부위를 활용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b>제품</b> 빅키보드, 조우스, 롤러조이스틱, 안구마우스 등

## 8. 법률 지원



### 무료 법률구조 제도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09만 5,00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http://www.klac.or.kr))



### 무료 법률상담

####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 내용

- 방문상담 : 전국 133곳 공단 사무소, 10~17시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 방법

예약(필수)\* 후 상담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http://www.klac.or.kr>)



## 법률홈닥터

###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 방법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신청

###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 마을변호사

###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 내용

-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 방법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게 문의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 법무부(☎02-2110-3178)



## 마을세무사

###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 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44-205-3811)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09만 5,0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방법

개인회생·파산센터로 예약(필수)\*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71), 대구(☎053-756-1801), 광주(☎062-224-7806), 대전(☎042-721-7000), 울산(☎052-708-0212), 수원(☎031-8019-7577)

## 9. 문화여가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대상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2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 자주 하는 질문

**제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재충전 완료 후 1.28~1.31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1.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21.2.3~)을 다운로드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12.31)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당해 사업 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재분리 되지 않습니다.
- 주요 가맹점 할인혜택 제공은 카드당 할인매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 내(최대 5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2021년부터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재충전 기간: 2021.1.28.(목)~1.31(일), 대상자 문자 안내





## 스포츠강좌이용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만 12~64세 저소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1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장애인은 '21년 8월에 신청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 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 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4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방법

-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법률센터 빌딩 B10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신한페이판)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 스마트폰 미소지자 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이용권자 등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1.11.30.(화)까지
- 신청기간 : '21.1.11.(월) ~ 2.5.(금)
  - ※ 선정안내 : '21.2.17.(수)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http://www.forestcard.or.kr))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지급 → ('21) 이용권 전용 앱 또는 선불카드

###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 10월 31일까지 사용 → ('21) 11월 30일까지 사용



## 관광정보 안내

### 1. 장애인 접근성 픽토그램

<p>1. 단독 접근 가능</p>	<p>2. 장애인 활동 보조 필요</p> <p>어려움 약간 어려움 쉬움</p>	<p>3. 단차없음</p>	<p>4. 청각장애인 접근성</p>
<p>5. 시각장애인 접근성</p>	<p>6. 저상버스 접근가능</p>	<p>7. 장애인 전용리프트</p>	<p>8. 장애인 화장실</p>
<p>9. 승강기 유, 무</p>	<p>10. 장애인 전용 주차장</p>	<p>11. 일반 주차장</p>	<p>12. 수동 휠체어 대여</p>
<p>13. 전동 휠체어 대여</p>	<p>14. 장애인 전용 매표소</p>	<p>15. 장애인 전용 객실 유, 무</p>	<p>16. 테이블 비치 유, 무</p>

## 2. 장애인 여행 정보 사이트

구분	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korean.visitkorea.or.kr
서울시복지포털 - 장애인복지(관광정보)	wis.seoul.go.kr
서울관광재단 - 서울다누림관광	www.seouldanurim.net ☎1670-0880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	www.jangtour.org/ ☎054-745-2255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ww.wheeltour.or.kr ☎053-633-8001/053-621-6160
휠체어와 함께 가는 부산관광	www.wheelbusan.or.kr ☎051-783-8308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	www.visitjeju.net ☎064-740-6000

## 3. 장애인 여행 관련 여행사

구분	사이트	연락처
곰두리 여행	http://www.gomduritour.com	02-6383-1000
우리함께(제주도)	http://www.jejudoori.com	064-742-0078
어뮤즈트래블	https://www.amusetravel.com/	02-719-6811
에이블투어(주)	http://www.abletour.kr	031-843-1101
유니버설디자인투어	http://www.wheelchairtour.co.kr/	02-736-7047
모두를 위한 관광	www.tourforall.net	031-978-0755



## 스포츠활동

### 1. 장애인체육 경기종목

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수영, 승마, 사이클,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배구, 축구, 탁구, 볼링, 휠체어럭비,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휠체어컬링, 태권도, 카누, 트라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스노보드 등

### 2. 주요 스포츠 종목

#### ● 보치아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1987년 제 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보치아 개최되었으며,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주체로 1990년 제 1회 전국뇌성마비인 보치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음. 개인전 경기와 2인조 경기는 4엔드, 단체전은 6엔드로 이루어지며, 개인 경기 선수는 3번과 4번 던지기 구역에서 경기하고 단체 경기는 1, 3, 5번(홈 사이드), 2, 4, 6번(어웨이 사이드)까지 던지기 구역을 사용하여 경기함. 선수들은 공을 경기장 안으로 던지거나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냄. 6개의 빨간색 공과 6개의 파란색 공을 가지고 각 선수가 매 회마다 상대방의 제일 가까운 공보다 표적구에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씩 부가하며 마지막 엔드에 점수를 합산하여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함.

※ 문의 :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02-930-8180, <http://koreaboccia.koreanpc.kr/>)

#### ●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축구

축구경기는 유형별로 5인제 시각장애인,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11인제 지적장애인, 11인제 청각장애인 부분으로 실시함.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축구는 국제 축구 평의회(IFAB)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각 팀은 골키퍼를 포함하여 7명의 선수로 구성됨. 축구경기는 FT1, FT2, FT3등급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으며, 각 경기당 최대 3명~5명까지 선수교체가 가능함. 각 팀은 경기시간 동안에 반드시 FT1 선수를 최소 1명 이상 출전시켜야하며, FT3 선수는 최대 1명만 출전 가능함. 경기는 전·후반 30분씩이며 전·후반 사이의 휴식시간은 15분 이내임.

※ 문의 : 대한장애인축구협회(☎02-735-5851~3, <http://kofad.koreanpc.kr/>)

### ● 파크골프

파크골프의 어원은 Park(공원) + Golf(골프) = Park Golf(커뮤니케이션 스포츠)의 의미임. 즉, 공원 개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 적은 부지에서 '장애인과 어린아이부터 노인, 3세대 가족, 연인, 직장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임. 파크골프는 타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를 1홀이라하고 9홀이 하프 18홀이 1라운드로 이루어짐. 1홀의 거리는 20~100m이고, 파는 3~5타로 설정되어짐. 코스에는 Fairway, 벙커, 러프, 그리고 플레이를 금지하는 OB지역이 있음. 룰을 위반한 경우 2타를 더 가산하는 패널티가 부여되며, 모두 2타 벌칙이 있음. 1라운드는 18홀로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가 일반적임. 4인 1조로 진행되며, 18홀 기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됨.

※ 문의 : 대한장애인골프협회(☎070-7712-6700~3, <http://kdpga.koreanpc.kr/>)





# 3



## 시설안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68

장애인 거주시설

18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8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90

장애인 교육기관

194



#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직업지원,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문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내 회원기관 참조 ([www.hinet.or.kr](http://www.hinet.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남구	강남세움복지관	02-2184-8700	종합
2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	02-445-8006	종합
3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02-3411-9581~3	종합
4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종합
5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2	종합
6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4~8	종합
7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뇌성마비
8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02-3665-3831	종합
9	관악구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02-877-0750	종합
10	광진구	정립회관	02-446-1237	지체
11	구로구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02-830-6500	종합
12	구로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02-2611-1711	종합
13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00	종합
14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1~2	뇌성마비
15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종합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6	노원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02-935-6375~6	지체
17	노원구	성민복지관	02-931-7970~2	종합
18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02-6952-1777	종합
19	동대문구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927-0063	종합
20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02-2244-3100	종합
21	동작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종합
22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종합
23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00	종합
24	서초구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02-2055-0909	종합
25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00	종합
26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02-915-9200	종합
27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02-3432-0477	지체
28	송파구	송파인성장장애인복지관	02-431-8881	종합
29	양천구	양천해누리복지관	02-2061-2500	종합
30	영등포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2-3667-7979	종합
31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02-707-1970	종합
32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종합
33	은평구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02-6951-0301	종합
34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02-6395-7070	종합
35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02-2235-8630	종합
36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종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 및 교육, 야외활동,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wis.seoul.go.kr) 및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www.kdda.or.kr)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서구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02-2662-3491~4	뇌성마비
2	강서구	햇별교실	02-2663-0670	지적·뇌병변
3	강서구	금곡행복쉼터 주간보호센터	070-7576-2706	뇌성마비
4	관악구	갑을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6414-8586	뇌성마비
5	광진구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	02-446-1237	지체·뇌병변
6	노원구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02-932-4415	뇌성마비
7	노원구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02-6928-7350	지체·뇌병변
8	도봉구	지앤지주간보호센터	02-998-2855	뇌병변
9	마포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302-1066	지체·지적·뇌병변
10	마포구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02-359-1000	뇌병변
11	서초구	서리풀주간이용센터	070-7209-2942	뇌병변
12	송파구	THE 채움	02-2043-8460	지적·자폐/ 뇌병변(중복)
13	용산구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02-713-5050	지체·뇌병변
14	은평구	기원주간보호센터	02-353-1367	지적·뇌병변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 이동서비스, 주거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등

### 문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내 회원센터 참조([www.koil.kr](http://www.koil.kr))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내 회원기관 참조([www.scil.kr](http://www.scil.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02-518-2197
2	강남구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9-3766
3	강동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
4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2-9664
5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6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80-5292
7	강서구	강서길라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2-0946
8	강서구	강서송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398-1007
9	강서구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1-2692
10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401-0874
11	강서구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64-0896
12	강서구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5-0420
13	관악구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7-0293
14	관악구	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42-3773
15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8-2031
16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4-8119
17	광진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437-2092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8	광진구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67-5004
19	광진구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4-4399
20	구로구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66-0233
21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22	구로구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16-3391
23	금천구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340
24	노원구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02-930-8212
25	노원구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02-933-6539
26	도봉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27	도봉구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5-0397
28	도봉구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93-6300
29	도봉구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5-1551
30	동대문구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66-2017
31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32	동대문구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67-4540
33	동작구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289-1885
34	동작구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6-3644
35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2-2536
36	동작구	우정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949-0104
37	마포구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18-4331
38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37-6150
39	서대문구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	02-720-6698
40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41	성동구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96-0551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42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43	성북구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3-8152
44	성북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21-7232
45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02-6082-6420
46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4-0920
47	송파구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2-0420
48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49	양천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7-0420
50	영등포구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33-3094
51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081-5900
52	영등포구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86-8482
53	용산구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04-0420
54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55	은평구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157-0420
56	은평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54-1724
57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7
58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59	종로구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22-9921
60	중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52-9050
61	중랑구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680-1207
62	중랑구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07-1072
63	중랑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8-0690



## 보조기기센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적절한 보조공학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여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문의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강북구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2	서울 강동구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02-440-5891~5
3	서울 강서구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02-2662-3495
4	서울 노원구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070-4258-7444,7257
5	서울 마포구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	02-6070-9264~9
6	경기 수원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031-295-7363
7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보조기기복부센터	031-852-7363
8	인천 계양구	노틀담복지관 자세유지기구센터	032-540-8988
9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뇌병변 장애인들의 돌봄, 교육, 건강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마포구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02-702-5771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 받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문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복지) 참조 (news.seoul.go.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세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2184-8787
2	강남구	미미위역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70-4354-4701
3	강동구	강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477-6571
4	강북구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70-8915-4335~7
5	강서구	강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25-7025
6	관악구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878-0155
7	광진구	광진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455-1221
8	구로구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2685-9579
9	금천구	금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56-3420
10	노원구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35-2999
11	도봉구	도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55-7979
12	동대문구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21-2229
13	동작구	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534-0535
14	마포구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717-9557
15	서대문구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358-8700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6	성동구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52-7942
17	성북구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09-7901
18	송파구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448-2019
19	양천구	양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735-2600
20	영등포구	영등포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2068-6466
21	은평구	은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383-5100
22	종로구	종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942-2223
23	중랑구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02-6953-0704



## 장애인체육시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 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장애인전용 체육시설현황 참조  
(www.sports.koreanpc.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강동구	서울수중재활센터	02-440-5700
2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체육센터	02-3663-8114
3	서울 관악구	SRC 서울센터	02-871-3636
4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체육센터)	02-446-1237
5	서울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	02-949-9114
6	서울 마포구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02-6070-9270
7	서울 송파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02-404-6240
8	서울 은평구	서부재활체육센터	02-388-6622
9	경기 고양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10	경기 고양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11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02-2616-3700
12	경기 광주시	SRC 재활체육관	031-799-3891
13	경기 광주시	성분도복지관(체육관)	031-799-0318
14	경기 성남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031-725-9500
15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031-259-0900
16	경기 수원시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수영장)	031-794-2266
17	경기 시흥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031-8084-0101
18	경기 안산시	명휘체육센터	031-406-1145
19	경기 안양시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	031-465-0950
20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032-719-7044
21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032-833-3055



## 주거복지센터

### 지원대상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

### 지원내용

- 서울주거상담센터 : 주거비 지원, 집수리비 지원, 주거지이전 지원, 공공주거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양 임대주택, 토지, 상가, 임대차관련 법률상담, 하자 접수 및 상담, 주거급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문의

- 서울주거상담센터 콜센터 (☎1600-3456) 또는 홈페이지(www.seoulhousing.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또는 홈페이지(www.lh.or.kr)

### 서울시 주거상담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주거복지센터	02-3453-2270
2	강동구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3	강북구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4	강서구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5	관악구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5-3197
6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7	구로구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8	금천구	금천주거복지센터	02-855-4522
9	노원구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10	도봉구	도봉주거복지센터	02-6958-8081~5
11	동대문구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2138-1901~5
12	동작구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13	마포구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4	서대문구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03-3733
15	서초구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2
16	성동구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5
17	성북구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18	송파구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19	양천구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4
20	영등포구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21	용산구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22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	02-2135-5690
23	은평구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24	종로구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25	중구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5
26	중랑구	중랑주거복지센터	02-3421-8960~2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마이홈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서울권 마이홈센터	02-3416-3604
2	강남구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	02-2182-2733
3	영등포구	서울서부권 마이홈센터	02-2169-8801~2
4	종로구	서울중부권 마이홈센터	02-6454-2722, 2700, 2733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장애인 가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02-6949-3133~4) / seoul.dfsc.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2	강동구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3	강북구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238-8859
4	강서구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2
5	관악구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86-9005
6	광진구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7	구로구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8	금천구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9	노원구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5179
10	도봉구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11	동대문구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12	동작구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13	마포구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14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15	서초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6	성동구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17	성북구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18	송파구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30-9681
19	영등포구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4
20	영등포구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069-0328
21	용산구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22	은평구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6
23	종로구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2-7941
24	중구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79-7680
25	중랑구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 2.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가정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요양·자립 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양육을 담당하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 제공

####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내 장애인복지시설(wis.seoul.go.kr)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서구	강서희망의집	02-2605-7980	성인	뇌병변
2	강서구	선린원	02-2654-3372	성인	뇌병변·중증장애
3	금천구	주사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070-5153-7363	성인	뇌병변· 지적·발달
4	노원구	사랑샘단기보호소	02-932-4635	아동· 청소년	만5세~ 만18세 장애인
5	동대문구	하늘꿈터	02-969-3927	성인 (남성)	자폐·지적· 뇌병변·지체
6	마포구	한벗동지	02-336-3100	아동· 성인	뇌병변·지체
7	서대문구	다솜센터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	02-372-9394	성인 (여성)	뇌병변· 지적·자폐
8	은평구	포도원복지센터	02-386-4020	성인 (여성)	발달· 뇌병변·지체
9	종로구	라파엘의집	02-739-7020	아동· 성인	뇌병변·중증장애
10	중랑구	다운누리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02-434-2114	성인 (여성)	지적·뇌병변





##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자립을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지원

###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www.jjang2.or.kr) 참조

### <서울>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동구	암사재활원	02-441-0407	아동	발달·뇌병변· 중증장애
2	강동구	주몽재활원	02-427-9734	아동·청소년	지체·뇌병변
3	강북구	디딤자리	02-987-6009	영유아 (만0~6세)	모든장애
4	노원구	늘편한집	02-933-5228	성인	지체·뇌병변
5	노원구	쉼터요양원	02-937-5057	성인 (만19~45세)	지체·뇌병변
6	성북구	승가원행복마을	02-921-6410	아동 (만4~18세)	지적·지체· 뇌병변
7	용산구	영락 애니아의 집	02-754-8507	아동	뇌병변
8	용산구	가브리엘의 집	02-757-1511	아동·성인	시각(필수)· 중증장애
9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	02-3156-6500	성인남성	발달·지체· 뇌병변·시각

## 〈경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광주시	SRC보듬터	031-799-3970	아동(만7세~)· 성인	지체·뇌병변
2	광주시	한사랑마을	031-764-2115	아동·성인	지체·뇌병변 (중증)
3	광주시	한사랑장애영아원	031-764-1119	영유아 (6개월~4세)	모든장애
4	김포시	해맑은마음터	031-981-0908	아동	발달·지체 (뇌병변)
5	김포시	향유의집	031-981-0909	성인	중증장애
6	남양주시	송천한마음의집	031-559-4322	성인	발달·지체 (뇌병변)
7	여주시	다산하늘센터	031-885-7771	성인	발달·뇌병변
8	이천시	새생명의집	031-634-8777	성인	발달·지체 (뇌병변)
9	포천시	생수의집	031-536-0585	성인	지적·뇌병변· 언어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할,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지원내용

지역사회 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립생활, 사회적응, 여가생활, 정서안정 등 지원

###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내 시설현황(ghcenter.org) 참조

## <서울>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남구	신망애공동생활가정	02-547-4186	성인(남성)	지적·지체
2	구로구	오뚜기하우스 1호, 2호	070-4258-7318	성인(남성)	뇌병변
3	서대문구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02-303-0867	성인(남성)	지적·지체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또는 퇴소자

### 지원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며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1670-5755 / www.welfare.seoul.kr 참조

###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기관>

연번	자립생활주택 주소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형태
1	강동구 올림픽로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	남(다세대)
2	강동구 천중로	삼육재활센터	031-799-3994	남(다세대)
3	강동구 천중로 / 강동구 고덕로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2-9664	여(다세대)
4	강북구 도봉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남(아파트)
5	강서구 공항대로 / 강서구 강서로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4-0874	남(아파트), 여(다세대)
6	강서구 화곡로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64-0896	남(다세대)
7	관악구 은천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8-2031	여(아파트)
8	광진구 능동로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437-2092	남(다세대)
9	구로구 부일로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여(다세대)
10	구로구 부일로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16-3391	남(다세대)
11	구로구 부일로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340	남(다세대)
12	노원구 노원로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07-1072	여(다세대)
13	도봉구 방학로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남(아파트)

연번	자립생활주택 주소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형태
14	동작구 성대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남(다세대)
15	서초구 방배로	해냄복지회	02-568-2270	남(아파트)
16	성동구 광나루로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8-0690	남(다세대)
17	성동구 마장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남(아파트)
18	성북구 동소문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21-7232	남(다세대)
19	송파구 송파대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4-0920	남(아파트)
20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양천구 월정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남, 여(다세대)
21	영등포구 도림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081-5900	남(아파트)
22	은평구 갈현로 / 은평구 증산로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8750-1724	남(다세대)
23	은평구 연서로 / 은평구 증산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8	남(다세대)
24	종로구 혜화로 / 종로구 창경궁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남(다세대), 여(아파트)
25	중랑구 겸재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02-518-2197	남(다세대)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근로사업장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www.kavrd.or.kr)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광진구	정립전자	02-446-6867
2	서울 노원구	동천	02-974-2950
3	서울 도봉구	굿월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4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립 미래형직업재활시설 그린내	02-303-4520
5	서울 종로구	더해봄(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02-742-0660
6	경기 파주시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031-946-7030
7	경기 파주시	에덴복지재단 형원	070-4369-7000



## 보호작업장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 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www.kavrd.or.kr)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서울 강서구	강서구휴먼희망일터	02-3665-1547	
2	서울 강서구	강서구희망센터	02-2696-3113	
3	서울 강서구	다사랑직업재활시설	070-7792-9300	
4	서울 구로구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02-2689-8791	
5	서울 성동구	두빛나래보호작업장	02-6238-8822	
6	서울 영등포구	라피드보호작업장	02-2677-8008	
7	서울 영등포구	행복한나무	02-324-7335	휠체어 이용 불가
8	서울 용산구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02-711-7882	
9	서울 은평구	빛나눔보호작업장	02-309-7480	휠체어 이용 불가

##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재활병원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병원·약국찾기 참조([www.hira.or.kr](http://www.hira.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1599-6114
2	강남구	메드렉스병원	02-6011-6000
3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1599-3114
4	강남구	제일정형외과병원	02-501-6868
5	강남구	청담병원	02-2104-2000
6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1577-5800
7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1588-4100
8	강동구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9	강북구	국립재활원	02-901-1700
10	강북구	성신병원	02-986-1313
11	강서구	강서바른세상병원	02-2603-0300
12	강서구	강서서울대효병원	02-2663-1114
13	강서구	서울큰나무병원	02-2695-1155
14	강서구	솔병원	02-2064-7575
15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1522-7000
16	관악구	심정병원	1588-3330
17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1877-8875
18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1588-1533
19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02-2626-1114
20	구로구	리본병원	02-2613-7000
21	금천구	금천서울대효병원	02-896-2114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22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1899-0001
23	노원구	노원참튼튼병원	1899-3920
24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661-3100
25	노원구	파로스병원	02-938-8540
26	도봉구	서울노보스병원	02-3492-3250
27	도봉구	한일병원	02-901-3114
28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29	동대문구	맑은수병원	02-2681-0119
30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1577-3675
31	동대문구	하늘병원	1544-7588
32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114
33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1800-1114
34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02-6070-9000
35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1599-1004
36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588-1511
37	서초구	고도일병원	1577-8907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9	성동구	제인병원	02-3408-2100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41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1577-0083
42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02-3400-1114
43	송파구	서울세계로병원	1670-9111
44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1688-7575
45	양천구	라온휴병원	02-2601-2611
46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1566-6688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47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1666-5000
48	양천구	연세로이 재활의학과	02-3666-8886
49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1661-7575
50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1899-1475
51	영등포구	명지춘혜재활병원	02-3284-7777
52	영등포구	성애병원	1811-8114
53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02-2632-0013
54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577-5587
55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2-2639-5114
56	용산구	금강아산병원	02-799-5000
57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58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1811-7755
59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6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114
61	은평구	연세노블병원	02-384-0009
62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1130
63	종로구	로이병원	1644-7541
64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1588-5700
65	종로구	서울송인병원	02-737-7582
66	종로구	세란병원	02-737-0181
67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68	중랑구	녹색병원	02-490-2000
69	중랑구	러스크서울병원	02-3426-0100
70	중랑구	서울선병원	02-436-1900
71	중랑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02-2036-0200
72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2276-7000



## 장애인치과

### 문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장애인진료치과찾기 참조([www.sndcc.org](http://www.sndcc.org))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 장애인치과	02-2662-3491~4
2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내 장애인치과	02-932-4414
3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통합치과치료센터	02-6070-9171
4	성동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02-2282-0001, 0012
5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6	종로구	푸르메치과의원	02-6395-7020

## 5. 장애인 교육기관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원대상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 순회교육 및 치료관련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교육지원청 부설기관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센터현황 참조([www.sen.go.kr](http://www.sen.go.kr))

연번	지역	기관명	장소	전화번호	관할 행정구
1	강남구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대청초	02-459-1013	강남구, 서초구
2	강서구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등원초	02-3665-0806~7	강서구, 양천구
3	구로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영일초	02-861~3-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4	노원구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신상중	02-956-1038~40	노원구, 도봉구
5	동작구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문창초	02-833-2895	동작구, 관악구
6	성동구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행당초	02-2292-6411~7	성동구, 광진구
7	성북구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송곡중	02-911-1078	강북구, 성북구
8	송파구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중대초	02-414-2634	강동구, 송파구
9	영등포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분원	영등포 평생학습관	02-2038-2700~3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10	은평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응암초	02-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1	중구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충무초	02-2278-6587~8	종로구, 중구, 용산구
12	종각구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묵동초	02-433-4327	동대문구, 종각구



## 장애전담 어린이집

### 문의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참조([info.childcare.go.kr](http://info.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참조([iseoul.seoul.go.kr](http://iseoul.seoul.go.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북구	까리타스어린이집	02-996-1556	법인·단체등
2	구로구	아나올장애아어린이집	02-852-1628	국·공립
3	노원구	초록어린이집	02-951-6118	국·공립
4	도봉구	두발로어린이집	02-999-2855	사회복지법인
5	도봉구	해바라기어린이집	02-999-0691	민간
6	마포구	우리마포어린이집	02-702-3100	국·공립
7	양천구	구립 신목장애아어린이집	02-2643-6554	국·공립
8	양천구	서울베다니어린이집	02-2605-9237	민간



## 특수학교

###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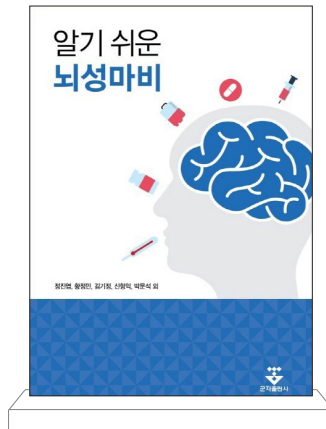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기관 찾기 참조  
([www.sen.go.kr/sedu/sedu/index.do](http://www.sen.go.kr/sedu/sedu/index.do))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동구	주몽학교	070-8255-0505	지체장애·지적장애
2	강서구	서울서진학교	02-6981-9000	지적장애
3	관악구	서울새롬학교	02-840-3535	지체장애
4	구로구	서울정진학교	02-2688-1304	지체장애·지적장애
5	노원구	서울정민학교	02-978-8405	지체장애
6	마포구	한국우진학교	02-6388-5800	지체장애
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재활학교	02-2123-8141	지체장애
8	서초구	서울나래학교	02-2058-0190	지체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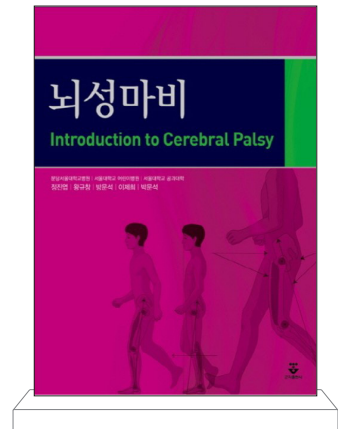
##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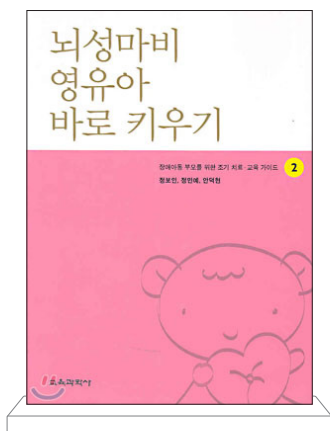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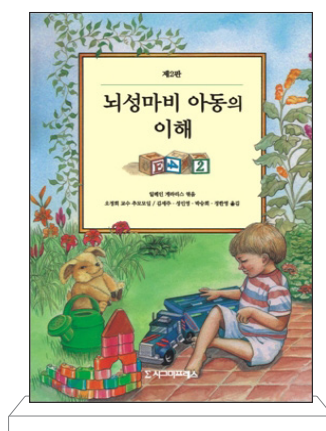
정진엽, 황정민, 김기정,  
신형익, 박문석 등저  
군자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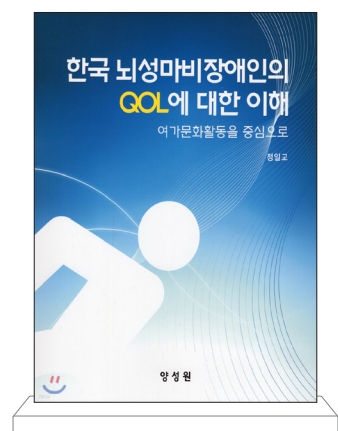
정진엽  
군자출판사



정보인 등저  
교육과학사



일레인 게라리스 저  
시그마프레스



정일교  
양성원(강철원)

## 참고문헌

- 박희찬(2016) 「뇌성마비장애인의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
- 군자출판사(2013) 「뇌성마비」
- 군자출판사(2016) 「알기 쉬운 뇌성마비」
- 시그마프레스(2012) 「신경언어장애」
- 보건복지부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http://www.welfare.seoul.kr>)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 서울시청 누리집(<https://news.seoul.go.kr>)
- 강서구청 누리집(<http://www.gangseo.seoul.kr>)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knat.go.kr>)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www.seoulats.or.kr>)
- 한국관광공사 누리집(<http://www.visitkorea.or.kr>)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www.hinet.or.kr>)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누리집(<http://www.koil.kr>)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http://seoul.dfsc.or.kr>)
- 생활체육센터(<https://sports.koreanpc.kr/>)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http://www.jjang2.or.kr>)
-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http://www.mapovision.org/default/>)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http://www.ghcenter.org/>)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누리집(<http://www.kdda.or.kr>)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누리집(<http://www.kavrd.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누리집(<http://www.sndcc.org>)
- 서울특별시 교육청 누리집(<http://sen.go.kr>)
- 강서양천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en.go.kr/sedu/gangseo/index.do>)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1판 1쇄 발행	2014년 12월 31일
2판 1쇄 발행	2015년 08월 31일
3판 1쇄 발행	2016년 11월 30일
4판 1쇄 발행	2017년 12월 20일
5판 1쇄 발행	2019년 08월 30일
6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6일
7판 1쇄 발행	2021년 12월 02일

---

**발 행 처**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발 행 인** 박세영

**편 집 인** 박선희·이수민·김소희

**주 소** (075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전 화** 02-2662-3491~4

**팩 스** 02-2662-2700

**홈 페이지** [www.grccp.or.kr](http://www.grccp.or.kr)

**디 자 인** 스토리에이티

---

# 2021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방화동 452-5)

T. (02)2662-3491~4 F. (02)2662-2700

[www.grccp.or.kr](http://www.grccp.or.kr)